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3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박덕흠·김석기·한기호

고동진・김예지・구자근

강승규 · 장동혁 · 엄태영

윤한홍·조배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63년 6대 국회부터 정착된 것임.

하지만 국회부의장은 4년의 국회 임기 중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2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및 선수 안배를 통해 다수의 중진의원이 부의장을 맡아 의원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구를 위한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비슷하게 정부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향력을 감안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4년의 국회임기 중 4명의 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임기는 그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의 임기는 2년,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	의장의 임기는 2년, 부의장의
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	
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